

「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2년 1월 14일

영 광 군



1. 조 례 명 :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2021년 영광군-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10년이상 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 조정 및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영광군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가. 재직기간 산정 조항 수정(기존 근거조항 삭제)

- (현행)제23조제11항 “(생략) 다만,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(생략)”
- (변경)제23조제11항 “(생략) 다만,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(생략)”

나. 장기재직 휴가일수 조정

구분	현행		개정		증·감(일수)
	일수	분할횟수	일수	분할횟수	
10년이상 20년미만	5	2	10	2	+5
20년이상 30년미만	10	2	15	3	+5
30년이상	10	2	20	4	+10

다. 장기재직 휴가일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

-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의 경우 개정이후 추가로 허용

라.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

- 선거사무 및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추가

4. 일부개정조례(안)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의견제출

-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(참조 : 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(전화 : 061-350-523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2.1.14.~2022.1.24.(10일간)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- 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

우) 57036 /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총무과
전화) 061-350-5236/ FAX) 061-350-5592

라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

의견제출서

1. 조 례 안

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

2. 의 견

관련조문

의견사항

3. 기 타
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의견제출인 주 소

(전화 :)

성 명

(서명 또는 인)

영 광 군 수 귀하

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18조제2항”을 “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1항 제1호, 제2호,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(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)
2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: 15일(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)
3. 재직기간 30년 이상 : 20일(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)

제23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⑮ 군수는 투표사무원,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(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)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의 경우 제23조제11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추가로 허가하여 적용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특별휴가) ① ~ ⑩ (생략)</p> <p>⑪ 소속기관의 장은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, 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. , <단서 신설 2019. 4. 26.></p> <p>1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<u>5일</u>(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)</p> <p>2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: <u>10일</u>(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)</p> <p>3. 재직기간 30년 이상 : <u>10일</u> (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)</p> <p>⑫ ~ ⑭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23조(특별휴가) ① ~ ⑩ (현행과 같음)</p> <p>⑪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<u>10일</u>-----</p> <p>2. ----- <u>15일(3회)</u>----- --</p> <p>3. ----- <u>20일(4회)</u>-----</p> <p>⑫ ~ ⑭ (현행과 같음)</p> <p>⑮ <u>군수는 투표사무원,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(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)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</u></p>

「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2년 1월 13일

영 광 군 수



1. 조 례 명 :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영광 e-모빌리티 엑스포 관람객 및 엑스포에 참가하는 기관·단체에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교통편의 등 제공 근거 조항 신설
 - 이모빌리티 엑스포 관람객 및 엑스포에 참가하는 기관·단체에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(안 제8조의2)

4. 일부개정조례(안)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의견제출

-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(참조 : 이모빌리티산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모빌리티산업과(전화 : 061-350-47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. 13.~2022. 1. 23.(10일간)

나. 의견 제출사항

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

우) 57036 /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2길 61

영광군청 이모빌리티산업과

전화) 061-350-4732/ FAX) 061-350-4749

라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

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관람객 등에 대한 편의 제공)군수는 국제 스마트 이모빌리티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관람객과 참가기관·단체에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조직위원회 구성) 군수는 제6조의제8호와 관련하여 국제 스마트 이모빌리티 엑스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 조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8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의2(관람객 등에 대한 편의 제공)군수는 국제 스마트 이모빌리티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관람객과 참가 기관·단체에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.</p>